

학업성적관리규정

인천주안초등학교
2006.03.01. 제정
2006.08.24. 개정
2014.03.13. 개정
2014.09.12. 개정
2015.03.23. 개정
2016.03.09. 개정
2016.06.07. 개정
2018.03.29. 개정
2019.07.08. 개정
2020.09.23. 개정
2021.03.22. 개정
2022.03.14. 개정
2023.03.14. 개정
2023.08.29. 개정
2024.03.13. 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318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477호를 준거로 하여 인천광역시의 초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학교에서 적용할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기본 방침)

- ① 본교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학년(군) 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평가는 국가 수준 교육과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반영하여 학생의 교육 목표 도달 정도를 확인하고 학습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교수·학습의 질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 ③ 평가는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근거하여 교수·학습과 평가활동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과(목)의 성격과 학습자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 ④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전산입력·관리 하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누가기록 방법¹⁾은 교사 자율로 한다.
- ⑤ 본교는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근거로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개정하여 활용한다.
- ⑥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항에 따라 학생이 배운 학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성취기준에 부합하는 평가를 실시한다.
- ⑦ 자녀가 재학하는 학교의 교직원으로 부모가 재직하는 경우, 자녀와 관련한 ‘평가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

1) 누가기록 방법은 기재양식, 기재된 기록의 관리 방법 등을 의미한다.

⑧ 학생이 전출·면제·유예 등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에 원적교에서는 해당 학생이 재학할 때까지의 각종 자료를 모두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고, 증빙서류는 원적교에서 보관한다.

가. 인적사항

나. 학적사항

다. 출결상황

라.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마. 교과학습 발달상황

바.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별 누가기록 및 특기사항

사.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누가기록

아.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제3조 (설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의 작성·관리 관련 업무의 공정하고 적절한 처리를 위해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학교의 여건에 따라 명칭을 달리하거나 타 위원회와 통합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 ①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 ③ 위원의 수 및 위원은 업무분장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고, 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 ④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⑤ 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에 한한다.

제5조 (심의 내용)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한다.

- ①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 ② 각 학년(군)협의회에서 제출된 <학년(군)평가 기본계획>
가. 교과학습 평가 계획
나.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계획
- ③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 ④ 평가 관련 중요 자료의 보관 기간
- ⑤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자료의 정정 등에 관한 사항
- ⑥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등

제6조 (운영)

- ① 회의는 학기 초 및 심의사항이 발생했을 때 개의하며,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1/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 ③ 회의가 종료되면 회의 결과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 ④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학부모위원에게 사전 공개가 불가한 안건은 학부모위원의 참여를 제한한다.

제3장 교과학습 평가 및 관리

제7조 (평가의 목표·기준·내용 및 방법)

- ① 교과학습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교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 ② 각 학년(군)협의회는 학교 특성 및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기반으로 하여 평가의 영역²⁾·요소³⁾·방법·기준 및 결과의 활용 등을 포함한 <학년(군)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학급별로 평가 계획을 달리할 수 있다.
- ③ <학년(군)평가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각 교과(목)별 평가의 구체적인 사항은 학급 담임교사 또는 교과 전담교사가 정하여 실시한다.
- ④ 확정된 평가 계획은 정보공시 등을 통해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또한,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정하여 평가 실시 전에 재공지한다.
- ⑤ 교과학습의 평가는 평가 계획에 따라 교과 수업 시간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교사가 직접 관찰·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평가하도록 한다.
- ⑥ 감염병의 전국적 유행 등 국가 재난에 준하는 상황에서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행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⑦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학생들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학생들의 교과특성은 교사가 교과학습 평가 및 수업 과정에서 수시·상시로 기록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 영역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기술한다.
- ⑧ 교과학습 평가 결과와 관련한 이의신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이의신청 절차를 마친 후 심의를 거쳐 처리한다.

제8조 (평가의 활용 및 결과 처리)

- ① 교과학습 평가는 교수·학습 방법의 개선 및 후속지도 자료로 다음과 같이 활용한다.
 - 가. 학생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후속지도 자료
 - 나. 교수·학습 방법 개선 자료
 - 다.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을 위한 자료
- ②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 결과는 학생 및 학부모에게 제공하며, 세부적인 방법 및 횟수 등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 ③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학생의 평가 결과는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 ④ 학생의 교과학습 평가 결과물 및 성적처리가 끝난 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당해 학년도에만 보관한다.

2) 평가의 영역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평가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영역을 의미하며, 이때 영역은 ‘교육과정의 영역, 핵심개념, 기능 등’을 활용하여 교과 및 학교의 특성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음. 정보공시 관련, 교과(목)별 평가 영역 누락 여부를 유의한다.

3) 교육과정 성취기준 도달의 증거로, 학생들이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핵심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평가 내용을 의미함.

제4장 창의적 체험활동 평가 및 관리

제9조 (창의적 체험활동)

- ① 각 학년(군)협의회는 학교 교육과정을 근거로 창의적 체험활동의 영역별 활동내용과 평가방법을 포함한 <학년(군)평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학교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시 학급별로 평가 계획을 달리할 수 있다.
- ② 창의적 체험활동은 영역별로 학급 담임교사와 창의적 체험활동 담당교사가 분담하여 평가하고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한다.
- ③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는 학생의 영역별 활동에 대해 교사가 상시 관찰 및 평가한 누가기록을 바탕으로 구체적 활동 사실과 학생의 활동 태도 및 노력에 의한 행동 변화와 성장 등을 기재한다.

제5장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기록 및 관리

제10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교사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문장으로 입력한다.
- ②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1항에 따른 가해학생 관련 기록과 관리는 동법 제16조의2(학교폭력 조치사항 관리)와 교육부훈령 제433호, 제477호를 따른다.

제6장 기타 사항

제11조 (기타사항)

- ①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평가 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각 학년(군)협의회에서 결정하여 학급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가 처리한다.
- ②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모든 학생에 대해 입력한다. 학생이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고 교사가 학생에 대하여 직접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는 그 사유를 입력한다.⁴⁾
- ③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면제, 유예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평가 결과가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입학을 위하여 그 평가 결과를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귀국학생 등’은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편입학

4) (예시) 장기결석생(순회교육대상학생, 위탁학생 등) 입력사항: 장기결석(순회교육, 위탁학생 등)으로 특이사항 없음.

한 후 취득한 평가 결과 처리는 교육부 훈령 제477호에 따른다.

- ⑤ 장애학생이 평가를 받을 때에는 장애 유형의 정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처리한다.
- ⑥ 성적이 산출되는 위탁교(기관)의 위탁학생, 선도 프로그램 참여 학생 등의 평가 결과 처리는 해당 교(기관)에서 제공한 내용을 근거로 각 학년(군)협의회에서 결정하여 학급 담임교사 및 교과 담당교사가 처리한다.
- ⑦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는 제5조제6항에 의거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지침에 없는 사항의 처리)

이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훈령 제477호, 2024.3.1., 일부개정 2024.2.8.]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